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997년 5월
기획총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제안자 : 1996년 4월 29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6년 5월 8일 (미료안건처리)

1997년 5월 7일 재회부

다. 상정일자 : 제6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1997년 5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지방세과장 정광량>

가. 제안사유

- 국가유공자 및 노인복지시설과 여객터미널,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 아파트형 공장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세 감면으로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의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기반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3급내지 5급의 경우 일부만 보철용 승용차 면허세 면제 → 상이급수 3급 ~ 5급 전체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면제
- 노인복지시설중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감면
- 과학관육성법에 의거 등록된 과학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면제
-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50% 감면
-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 과세면제
-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감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종근)

-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책적세제지원관계법령에 따라 구세를 감면하여 주민의 복지향상 및 경쟁력 강화기반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
- 노인복지시설중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감면 지원은 현재 관내 노인복지시설 3개소중 서구 풍암동산 108-1번지에 위치한 벨엘타운요양원이 해당되며
-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면제

-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으나 현재 터미널부지는 신세계백화점과 공부상 명확한 한계가 불분명한 상태이며
- 영구임대주택안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면제
-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감면 신설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시 경감된 세금을 추징한다는 조항을 신설
- 지방세 감면 내용중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 상기 구세감면개정조례안은 '96.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55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미로처리된 안건으로 관계법에 의한 구세감면은 광역시내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 민원발생소지 등을 고려 충분한 질의 검토후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1997. 5. 21.

발 의 자 박종옥 의원 외 7인

1. 수정사유

국가유공자 및 노인복지시설과 여객터미널,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 아파트형 공장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세 감면으로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의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기반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11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를 삭제한다.

3. 기타 참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개	수
	정	정
	<p>(신 설) 제11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p>	<p>(삭 제)</p>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조례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를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제1항중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로 하고,

제12조제2항중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 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생략)</p> <p>② 국가유공자에 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p> <p>(신설)</p>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p> <p>-----</p> <p>-----</p> <p>-----</p> <p>-----</p> <p>제5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p> <p>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 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6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생략)</p> <p>1. ~ 6. (생략)</p> <p>(신설)</p>	<p>제6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1조의2(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단체·주택건설업자(부가가치세법 제		-----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		-----		
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		-----		
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		-----		
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 규		-----		
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		-----		
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 이상		-----		
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		
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		-----		
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		-----		
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p> <p>②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p> <p>-----</p> <p>-----</p> <p>-----</p> <p>-----</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p> <p>-----</p> <p>(신설) 제14조의2(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조변경)</p>	<p>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p> <p>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지상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